

## 2024년 4단계 BK21사업 우수대학원생 국제공동연수 3차 공고 관련 FAQ

<BK21사업팀, '24. 11. 13.>

### □ 공고 및 선발

**Q1. 국제 공동연수 기간을 1년 이내로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나요?**

A1. 국제 공동연수 기간은 ‘6개월/12개월’ 2가지 중 하나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.

※ 연수 개시 후 6개월 미만 내 연수 중단 시, 연수비는 항공료를 포함한 전액 반납해야 하며 해당 학생은 이후 4단계 BK21사업 국제 공동연수 사업 참여 희망 시 패널티 부여 가능(6개월 신청자도 해당)

**Q2. 기존 대학 선발 대상도 재단으로 신청하면 되나요?**

A2. 네 맞습니다. 3차 공고는 별도의 대학 선발을 진행하지 않고, 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

**Q3. 대학별 지원 가능 인원 또는 교육연구단(팀)별 지원 가능 인원이 정해져있나요?**

A3. 대학 또는 교육연구단(팀)별 지원 가능 인원에 제한은 없습니다.

**Q4. 지원자격 중, “3개월 이상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한 자”에서 3개월 이상 사업 참여는 ‘박사과정’으로의 참여인가요?**

A4. 석사, 박사, 통합과정 모두 포함하여 3개월 이상 참여하셨으면 됩니다.

**Q5.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는 “참여대학원생” 요건을 만족하나, 선정이후 해당 요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경우 지원이 불가한가요?**

A5. 신청서 접수 마감일자 기준으로 신청 자격요건을 만족하나, 선정 이후에 참여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, 국제 공동연수 신청 및 선정이 가능합니다.

※ 연수기간 동안 BK21사업 참여 현황 유지 시, 연구장학금 외 국제화경비 등 사업비 집행가능

#### Q6. 석·박사 통합과정생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?

A6. 석·박사 통합과정생의 경우, 대학 내부 규정 상 박사과정에 준하는 참여대학원생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,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 통합과정생인 자여야 합니다.

#### Q7. 국제 공동연수지 및 연수기관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?

A7. 국제 공동연수지 및 연수기관에 대해 참여대학원생 및 지도 교수와의 논의 후 연수지 및 연수기관을 컨텍 및 선정하시고, 해당 선정완료 사항을 연수계획서에 포함시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연수기관 확정 관련 서류는 대학에서 보관증빙으로 구비해주시면 됩니다.

#### Q8. 국제 공동연수 계획(연수기간,기관 등) 변경 시 사업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한 변경 신청과 함께 재단으로 공문 발송도 필요한가요?

A8. 국제 공동연수 계획 변경 시, 사업 종합정보시스템(<https://bk21four.nrf.re.kr/bkms>)을 통한 변경 승인 요청만 해주시면 됩니다.

※ 연수계획 변경 신청 관련 시스템 이용 안내 방법 [별첨4] 참고

#### Q9. 최종선정 이후, '25.2.28까지 출국이 어려울 경우, 출국일 연장이 가능한가요?

A9. 금번 공고에 의해 선발된 경우에 한하여 '25.2.28.까지 출국하지 못할 경우, 사업비 반납 또는 재단의 승인을 받아 출국일 연장이 가능합니다.

※ 출국일을 연수개시일로 함

**Q10. 연수 개시 후,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한 중도 귀국이 가능한가요?**

A10. 연수 개시 후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중도 귀국할 경우, 항공료를 제외한 사업비를 월할 계산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. 또한 중도 귀국의 경우 재단으로 사전에 사업 중도포기 신청 공문을 보내 주셔야 합니다.

※ 단, 연수 개시 후 6개월 미만 내 연수 중단 시, 연수비는 항공료를 포함한 전액 반납해야 하며 해당 학생은 이후 4단계 BK21사업 국제 공동연수 사업 참여 희망 시 패널티 부여 가능(6개월 신청자도 해당)

**Q11. [서식1] 국제 공동연수 지원 신청서 상 작성하는 어학능력 자격시험 취득점수의 경우, 만료된 점수여도 가능한가요?**

A11. 만료된 점수여도 기재 가능합니다.

## □ 사업비 지급 및 결과보고

**Q1. 우수대학원생 국제 공동연수 선발 대상자에 대한 지원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?**

A1. 재단에서 대학(주관기관)으로 입금이 되며, 대학 내 관련 부서에서 연수생 개인 계좌로 지급을 해주시면 됩니다.

※ 협약관련 세부 절차는 최종 선발인원 공지 이후 별도 안내 예정

**Q2. 항공권의 경우, 일정상의 사유로 학생 또는 대학이 선결제 후 협약액이 입금되면 폐이백 처리해도 되나요?**

A2. 학생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먼저 선결제 한 후, 협약금액 입금 이후 폐이백 또는 계정대체 진행 가능합니다.

**Q3. 국제 공동연수비 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?**

A3. 정산 관련 안내는 추후 다시 드릴 예정입니다

Q4. 결과보고 관련 서류(착수보고서, 중간보고서, 결과보고서)는 언제 제출하면 되나요?

A4. 착수보고서, 중간보고서, 결과보고서는 해당 서류 제출 기한 내, 연수자가 대학으로 제출을 해주시고, 대학에서는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서류를 취합하여 시스템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.

## □ 기타 사항

Q1. 연수기간 중, 한국 일시 방문 또는 제 3국을 방문할 경우, 방문 일자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

A1. 연수기간 동안 현지체류를 원칙으로 하며, 15일 이내 범위에서 한국 일시 방문 또는 제 3국 방문시, 대학에 사전 신고하여야 합니다.

※ 국외 공동연구 수행 중 일시 귀국을 할 수 있는 허용일수(귀국허용일수)는 전체 연수기간 1년 중 출국과 입국일을 포함하여 연간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, 허용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유를 불문하고 불인정하여 일할 계산하여 정산 시 반납해야 함